

# 순천대학교 성과급연구보조비 지급규정

제정 1997. 7. 14.

개정 2006. 9. 1.

개정 2007. 4. 1.

개정 2009. 4. 3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국·공립대학연구보조비지급규정에 따라 순천대학교 전임교원 및 조교의 성과급 연구보조비(이하 “성과급”이라 한다.)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(개정 2006. 9. 1.)

제2조(성과급) ① 성과급의 지급액은 국·공립대학연구보조비지급규정에 따라 순천대학교(이하 “이 대학”라 한다)에 교부되는 성과급 총액의 범위 안에서 성과급연구보조비지급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회”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.

② 성과급은 연 4회 이내로 지급하고, 전임교원 및 조교 개인별로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교육·연구 및 봉사활동 등의 실적과 근무실적 등을 평가하여 책정한 성과급 총액을 분할 또는 일괄하여 지급한다. (개정 2006. 9. 1.)

③ 연구윤리위반 행위자와 허위업적 자료를 제출한 자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 (신설 2009. 4. 3)

④ 제3항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자는 지급된 성과급을 반납하여야 한다. (신설 2009. 4. 3)

제3조(심의회의 구성) ① 심의회는 교무처장, 기획처장, 학생처장 및 총장이 임명하는 단과대학별 각 1인의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.(개정 2007. 4. 1.)

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된다.(개정 2007. 4. 1.)

③ 각 단과대학에 단과대학별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둘 수 있다.

제4조(회의) ① 심의회의 회의는 총장의 요구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.

제5조(심의회의 기능)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성과급의 지급을 위한 교육·연구 및 봉사활동 등의 범위 결정
2. 교육·연구 및 봉사활동 등의 계획 및 실적의 심사에 관한 사항
3. 교육·연구 및 봉사활동 등의 실적에 따른 대상자별 지급액 책정
4. 교육·연구 및 봉사활동 등을 소홀히 한 교원에 대한 조치
5. 조교의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 (신설 2006. 9. 1.)
6. 기타 필요한 사항

제6조(계획서와 실적의 심사) ① 성과급을 지급 받고자 하는 전임교원 및 조교는 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·연구 및 봉사활동 등의 계획서와 그 활동 및 근무 실적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. (개정 2006. 9. 1.)

② 총장은 제1항의 계획과 실적을 종합하여 심의회에 회부하여야 한다.

③ 심의회 위원장은 제2항의 계획 및 실적에 대한 심의결과를 총장에게 회보하고 동 계획 및 실적을 보관하여야 한다.

제7조(삭제 2006. 9. 1.)

제8조(시행세칙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.

부 칙(1998. 7. 14.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6. 9. 1.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7. 4. 1.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9. 4. 3.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